

# - 2020회계연도 -

## 연천군 결산검사 의견서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검사기간 : 2021. 4. 9. - 4. 28 (20일간)

검사위원

- 대표위원: 박 총 식(군 의 원)
- 검사위원: 이 광 수(공인회계사)
- 검사위원: 이 종 목(前 공무원)
- 검사위원: 강 영 구(前 공무원)
- 검사위원: 박 성 수(前 공무원)

###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 결산검사 의견서

연천군수 귀하

2021년 4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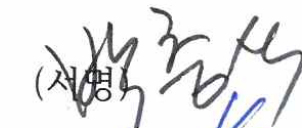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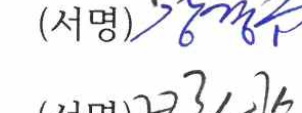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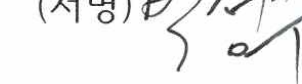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연천군 의회로부터 연천군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9일부터 2021년 4월 28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연천군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 서류가 지방 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연천군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서류 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연천군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 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 연천군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박 충 식	(서명)	
검사위원	이 종 목	(서명)	
검사위원	이 광 수	(서명)	
검사위원	강 영 구	(서명)	
검사위원	박 성 수	(서명)	

# 목 차

I . 결산검사 경과	-----	1
II . 결산검사 총괄현황	-----	3
1. 연천군 재정의 개황	-----	4
2. 세입·세출 결산	-----	8
3. 기금 결산	-----	18
4. 재무제표의 결산	-----	21
5. 성과보고서	-----	23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24
III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27
IV .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58
V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우수사례	-----	61

# I . 결산검사 경과

##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1. 4. 9 ~ 4. 28 (20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박충식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이광수 박성수	재무재표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금고 결산	
검사위원	이종목 강영구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 자 별	내 용	비 고
결산검사 및 현장 확인	2021. 4. 9 ~4. 28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결산 3. 기금결산보고서 4. 재무제표 5. 성과보고서 6. 금고의 결산 7. 현장 확인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현지 확인 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토의

##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연천군 재정의 개황

#### (1) 재정여건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일반회계	세입	441,292,672	477,171,172	582,653,243	759,820,350	753,976,539
	세출	345,943,482	355,637,471	383,107,783	563,053,787	593,008,131
	결산상잉여금	95,349,190	121,533,701	199,545,460	196,766,563	160,968,408
특별회계	세입	79,669,557	89,193,423	111,672,331	123,379,131	132,307,676
	세출	40,225,775	50,517,088	54,768,004	56,682,657	78,750,855
	결산상잉여금	39,443,782	38,676,335	56,904,327	66,696,477	53,556,820
기 금	수입	19,167,672	20,586,500	19,657,631	72,580,830	89,214,427
	지출	2,410,882	2,687,339	9,005,193	5,246,579	19,607,530
	결산상잉여금	16,756,790	17,918,580	10,652,438	67,334,251	69,606,897
총 계	세입(수입)	540,129,901	586,951,095	713,983,205	995,780,311	975,498,642
	세출(지출)	388,580,139	408,841,898	446,880,980	624,983,023	691,366,516
	결산상잉여금	151,549,762	178,109,197	267,102,225	330,797,291	284,132,126

지난 5년간 채무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자치단체 채무 계	5,916,000	176,000	88,000	-	-
공 채	-	-	-	-	-
차입금	5,916,000	0	0	-	-
채무부담행위	-	-	-	-	-
지방공기업 채무	264,000	176,000	88,000	-	-
채무총합계	6,180,000	176,000	88,000	-	-

② 채무는 예산대비 0%로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2) 재정건전성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 규정(훈령)에 의하면 예산대비 채무비율 등 지표를 주의단계나 심각단계에 있는지를 알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 판단 지표

관점	재정지표	산정방식	주의 기준	심각(위기) 기준
채무 관리	① 예산대비채무비율	$\frac{\text{지방채무 잔액}}{\text{총예산}}$	25%초과	40%초과
	② 채무상환비 비율	$\frac{\text{지방채무 상환액}}{\text{일반재원}}$	12%초과	17%초과
세입 관리	③ 지방세 징수액현황	$\frac{\text{당해연도 월별 누적 징수액}}{\text{최근 3년 평균 월별징수액}}$	50%미만	0%미만
자금 관리	④ 금고잔액 현황	$\frac{\text{당해연도 분기말 잔고}}{\text{최근 3년 평균 분기말 잔고}}$	20%미만	10%미만
공기업	⑤ 공기업 부채비율	부 채 준 자 산	400%초과	600%초과
	⑥ 개별공기업 부채비율			

연천군은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6개 기준에 하나라도 해당하지는 않는다.



③ <채무관리> 예산대비 채무비율 및 채무상환액 비율

(단위 :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대비 채무비율	1.45	0.03	0.01	-	-
채무상환비 비율	0.30	0.97	0.99	-	-

④ <세입관리> 지방세 징수액 현황

지방세 징수액 현황	:	$\frac{42,406,877,800\text{원}}{50,509,984,693\text{원}}$	=	83.9%
------------	---	---	---	-------

⑤ <자금관리> 금고잔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	$\frac{160,968,408,589\text{원}}{185,760,144,149\text{원}}$	=	86.6%
---------	---	---	---	-------

⑥ <공기업> 공기업 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	$\frac{0\text{원}}{533,237,655,003\text{원}}$	=	0%
---------	---	---	---	----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운영규정의 주의, 심각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본예산 반영)

$$\text{재정자립도} = 14.1 \% \left[ \frac{92,733,287,757\text{원}}{656,211,945,000\text{원}} \times 100 \right]$$

※ 지방세 : 보통세 + 목적세(지방교육세 제외) +과년도 수입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 **재정자립도**는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되나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세입 통계목 변동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text{재정자주도} = 76.5\% \left[ \frac{502,655,245,577\text{원}}{656,211,945,000\text{원}} \times 100 \right]$$

※ 자체수입 : 지방세 + 세외수입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조금

☞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동종자치단체(전국 군 평균 65.35%)보다 재정자주도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 세입 . 세출 결산

### (1) 총괄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전년도조성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차인잔액 (C=A-B)
합계	948,224,215	899,809,388	691,366,515	208,442,873
일반회계	744,413,864	753,976,539	593,008,131	160,968,408
공기업특별회계	124,557,551	128,615,680	75,976,729	52,638,951
기타특별회계	3,563,549	3,691,994	2,774,126	917,868
기금	75,689,251	13,525,175	19,607,529	△6,082,354

회 계 별	현년도 채무상환	이월액(D)				
		명시	사고	계속비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합계	0	77,785,601	15,205,421	66,757,269	9,149,174	115,234,656
일반회계	0	71,947,560	11,665,460	32,340,254	9,134,508	35,880,624
공기업 특별회계	0	5,838,041	3,236,238	34,417,015	0	9,147,656
기타 특별회계	0	0	303,723	0	14,666	599,479
기금	0	0	0	0	0	69,606,897

본 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은 899,809,388천원으로 예산현액 948,224,215천원보다 48,414,827천원 감소되었다.

세입결산액은 899,809,388천원, 세출결산액은 691,366,515천원으로 차인잔액 208,442,873천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77,785,601천원, 사고이월비 15,205,421천원 및 계속비 66,757,269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9,149,174천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에서 현년도 채무상환으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234,656천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액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기금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은 115,234,656천원임이 확인된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결손처분등)	미 수 납 (다음연도이월액)
결산액	744,413,864	760,668,945	753,976,539	1,046,268	5,646,137
결 산 확 인 액	744,413,864	760,668,945	753,976,539	1,046,268	5,646,137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는 실제 수납액 753,976,539천원으로 세입예산액 744,413,864천원보다 9,562,675천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과태료징수와 관련하여 22,094,86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7,663,037천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이 79%로써 부진하므로 징수대책을 강화하여야 하겠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목표액을 초과징수 하였으나, 627,198천원이 불납결손 처리 되었으며 미수납액이 3,850,225천원으로서 각 담당 실.과.원.소에서 적극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야 하나 부족한 부분이 있음.

본 연도 세입의 장부와 증빙서에 의한 결산확인액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천원)

수 납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753,976,539	753,976,539	0

###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천원)

연도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징수결정 대비수납액	징수결정대비 불납결손액
2019	633,648,423	769,750,934	759,820,350	4,394,923	123%	99%	0.57%
2020	579,076,945	760,668,945	753,976,539	1,046,268	131%	99%	0.14%
증 감	△54,571,478	△9,081,989	△5,843,811	△3,348,655	17%	64%	57%

전년대비 징수결정액은 9,081,989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납액은 전년대비 5,843,811천원 감소한 753,976,539천원이 수납되었다.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3,348,655천원 감소하였고, 주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합 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부족	기 타
1,046,268	450,911	34,694	232,182	22,055	306,426

##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b>합 계</b>		<b>579,076,945</b>	<b>760,668,945</b>	<b>753,976,539</b>	<b>1,046,267</b>	<b>5,646,136</b>
지방세	<b>소 계</b>	<b>40,795,000</b>	<b>44,621,861</b>	<b>42,406,877</b>	<b>419,070</b>	<b>1,795,912</b>
	주민세	540,000	579,140	555,907	72	23,160
	재산세	6,100,000	6,922,771	6,684,519	2,159	236,093
	자동차세	11,970,000	12,429,846	12,068,770	874	360,202
	담배소비세	5,510,000	5,610,295	5,610,295		
	지방소비세	10,455,000	10,278,000	10,278,000		
	지방소득세	5,400,000	6,670,213	6,452,091	1,140	216,982
	지난년도수입	820,000	2,131,596	757,295	414,825	959,475
세외수입	<b>소 계</b>	<b>24,278,596</b>	<b>33,697,162</b>	<b>29,219,739</b>	<b>627,197</b>	<b>3,850,224</b>
	재산임대수입	274,276	212,281	196,691		15,591
	사용료수입	2,882,927	2,866,356	2,846,425		19,932
	수수료수입	1,851,900	2,111,127	2,101,066		10,062
	사업수입	2,550,000	2,645,277	2,645,282		△5
	징수교부금수입	802,500	813,984	813,985		
	이자수입	2,300,000	2,953,272	2,953,258		14
	재산매각수입	2,488,537	6,293,897	5,124,630		1,169,269
	부담금	67,800	150,727	68,176		82,552
	과징금및과태료	472,730	851,586	557,221	781	293,585
	기타수입	9,947,926	11,225,090	11,171,779		53,311
	지난연도수입	640,000	3,573,565	741,236	626,416	2,205,913
지방교부세	<b>183,225,219</b>	<b>183,153,359</b>	<b>183,153,359</b>			
조정교부금 등	<b>80,794,000</b>	<b>84,907,975</b>	<b>84,907,975</b>			
보조금	<b>204,529,797</b>	<b>203,382,692</b>	<b>203,382,692</b>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b>45,454,333</b>	<b>210,905,896</b>	<b>210,905,896</b>			
지방채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수의 5.62%인 42,406,877천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3.87%인 29,219,739천원이 수납되었다.

지방교부세는 24.07%인 183,153,359천원, 조정교부금은 84,907,975천원(11.16%) 보조금은 203,382,692천원(26.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10,905,896천원(27.72%)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반납금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579,076,945	744,413,864	593,008,131	10,734,076	116,719,750	23,951,907
결산 확인액	579,076,945	744,413,864	593,008,131	10,734,076	116,719,750	23,951,907
차액	0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32건 399,825천원 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국제교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부족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대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예산 집행을 위한 과목변경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이용 및 이체는 예산액의 0.02%인 161,769천원으로서 투자유치 기구의 신설과 조직의 변경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인함.

예비비 사용액은 2,318,925천원으로 2021년 조직개편 기구의 신설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 7.28~8.11 호우에 따른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부족,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물품 및 방역물품 구입 등 확보된 예산이 없어 재해·재난 대응 등 예산으로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 하였다고 판단되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79.7%에 해당하는 593,008,131천원 이었으며 이월액은 명시이월 77,785,602천원, 사고이월 15,205,422천원, 계속비이월 66,757,270천원으로 이중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9,149,175천원 포함되어 있음.

계속비이월은 8건 35,344,725천원으로 사업기간 미도래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음.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3,951,907천원으로서 그 사유는 집행계획 변경 등 907,47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928,846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지출잔액 17,115,583천원 이었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 출 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 액
593,008,131	593,008,131	0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9 지출액	2020 회계연도			전년대비증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율	금액	비율
<b>합 계</b>	<b>563,053,750</b>	<b>744,413,865</b>	<b>593,008,131</b>	<b>79.7%</b>	<b>29,954,381</b>	<b>5.3%</b>
일반공공행정	87,488,768	59,783,284	56,235,174	94.1%	△31,253,594	△35.7%
공공질서및안전	3,763,920	19,527,602	17,918,883	91.8%	14,154,963	367%
교육	5,786,268	5,596,480	5,322,597	95.1%	△463.671	△8.0%
문화및관광	15,999,062	43,937,818	31,713,956	72.2%	15,714,894	98.2%
환경보호	37,214,302	50,263,295	44,499,202	88.5%	7,284,900	19.6%
사회복지	83,300,350	100,588,457	94,179,664	93.6%	10,879,314	13.1%
보건	8,679,347	13,190,009	10,982,434	83.3%	2,303,087	26.5%
농림해양수산	103,878,088	123,706,799	104,599,370	84.6%	721,282	0.7%
산업·중소기업	12,611,203	18,344,264	17,545,124	95.6%	4,933,921	39.1%
수송및교통	74,951,057	73,045,666	57,103,804	78.2%	△17,847,253	△23.8%
국토및지역개발	71,226,556	171,837,206	91,928,254	53.5%	20,701,690	29.1%
예비비	0	213,423	84	0.4%	84	
기타	58,154,829	64,379,562	60,979,585	94.7%	2,824,756	4.9%

본 회계연도의 기능별 지출액은 ①농림해양수산 104,599,370천원, ②사회복지 94,179,664천원, ③국토및지역개발 91,928,254천원, ④기타 60,979,585천원, ⑤수송및교통 57,103,804천원, ⑥일반공공행정 56,235,174천원 등의 순이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20,701,690천원이며, 일반공공행정분야는 △35.7%가 감소하였다.

### (3) 특별회계(직영 공기업포함)

#### 가. 세 입

####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b>합계</b>	<b>128,127,175</b>	<b>132,778,650</b>	<b>132,307,674</b>	<b>10,605</b>	<b>461,096</b>	
특별회계	상수도	51,098,926	53,356,723	53,075,982		280,741
	하수도	73,458,625	75,593,442	75,539,698		53,744
	의료급여기금	794,383	843,236	841,759		1,477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39,858	939,858	939,858		
	주차장사업	656,742	873,044	737,340	10,605	125,134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0,788	94,494	94,494		
	장기미집행도시계획	826,053	826,053	826,053		
	댐주변지역지원사업	251,800	251,800	252,490		
<b>결산 확인액</b>	<b>128,127,175</b>	<b>132,778,650</b>	<b>132,307,674</b>	<b>10,605</b>	<b>461,096</b>	
차액	0	0	0	0	0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132,778,650천원은 예산현액의 103%로서 4,179,774천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기인하며, 징수 결정액 대 수납액의 비율은 99.6%로서 전년도에 비하여 0.4% 증가하였다.

#### ○ 세입결산액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은 다음과 같이 부합되었음.

####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천원)

구분	결산서잔액	금고 출납잔액	차액
<b>합계</b>	<b>132,307,674</b>	<b>132,307,674</b>	<b>0</b>
공기업특별회계	128,615,680	128,615,680	0
기타특별회계	3,691,994	3,691,994	0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및 하수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6개의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와 일치하였음.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계	55,948,354	128,120,410	78,750,855	43,795,018	5,574,536
공기업특별회계	52,607,354	124,557,551	75,976,729	43,491,295	5,089,527
상수도사업	19,786,937	51,098,926	29,920,259	18,971,755	2,206,912
하수도사업	32,820,417	73,458,624	46,056,470	24,519,540	2,882,615
기타특별회계	3,341,000	3,562,859	2,774,126	303,723	485,009
의료급여기금	794,383	794,383	778,311		16,07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939,858	939,858	939,858		0
주차장사업	656,742	656,742	210,691		446,0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94,217	94,217	94,021		195
장기미집행도시계획특별회계	604,000	825,859	522,136	303,723	0
주택사업특별회계 담주변지역지원사업	251,800	251,800	229,109		22,691
결산확인액	55,948,354	128,120,410	78,750,855	43,795,018	5,574,536
차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예산현액은 128,120,410천원 지출액은 78,750,855천원, 이월액은 43,795,018천원이며 이중 5,574,53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 세출결산액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 천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78,750,855	78,739,694	11,16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은 많은 통장(계좌)관리 어려움으로 세입·세출 일계에 금액이 불부합 함.

(4)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본 연도의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천원)

구 분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역	금액	내역	금액	내역	금액
합 계	30	66,757,269	185	77,785,600	93	15,205,420
일반회계	13	32,340,254	177	71,947,560	79	11,665,46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	13,031,971	7	5,203,286	7	736,49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	21,385,044	1	634,754	6	2,499,740
장기집행도계획특별회계					1	303,723

검사결과 계속비이월 30건 66,757,269천원, 명시이월 185건 77,785,600천원  
사고이월 93건 15,205,420천원으로 확인되었다.

### 3. 기금 결산

본 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기금 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말 조성액 ㉑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㉒=㉑+㉓
		계 ㉓=㉑-㉔	조성액 ㉑	사용액 ㉔	
<b>계</b>	<b>75,689,251</b>	<b>△6,082,355</b>	<b>13,525,175</b>	<b>19,607,530</b>	<b>69,606,897</b>
통합관리기금	12,924,023	558,728	1,046,090	487,362	13,482,751
남북교류협력기금	824,403	90,408	590,408	500,000	914,811
재난관리기금	2,210,336	16,370	577,851	561,481	2,226,706
노인복지기금	161,293	56,440	72,268	15,828	217,733
양성평등기금	233,973	18,079	33,852	15,773	252,053
체육진흥기금	2,235,463	106,032	156,032	50,000	2,341,495
식품진흥기금	32,194	6,351	13,976	7,625	38,545
농업발전기금	1,605,689	860,227	1,850,227	990,000	2,465,916
농기계임대사업기금	917,415	△2,346	2,997,654	3,000,000	915,069
향토장학기금	207,728	165,628	595,366	429,738	373,357
옥외광고정비기금	326,948	22,120	246,843	224,723	349,06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7,156	16,497	141,497	125,000	23,652
재정안정화기금	54,002,630	△7,996,889	5,203,111	13,200,000	46,005,741

2020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은 75,689,251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69,606,897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19,607,530천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다.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 사용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조성.사용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14,597,789	16,756,790	9,263,580	11,101,510	<b>75,689,251</b>	
당해연도 조성액	4,569,883	3,829,709	10,394,050	61,479,320	<b>13,525,175</b>	
당해연도 사용액	2,410,882	2,687,338	9,005,193	<b>5,246,579</b>	<b>19,607,530</b>	
당해연도말 조성액	<b>16,756,790</b>	<b>17,918,580</b>	<b>10,652,438</b>	<b>67,334,251</b>	<b>69,606,897</b>	103%

※ 2019년 3,573백만원이 일반회계 예탁됨.

전년도말 조성액 75,689,251천원과 당해연도 13,525,175천원을 조성하여 19,607,530천원을 사용하여 69,606,897천원이 조성되었음.

## <기금운용 현황>

(단위:천원)

구분	전년도 (사고 등)	수입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 등)
합계	75,689,251	13,525,175	19,607,530	69,606,897
통합관리기금	12,924,023	1,046,090	487,362	13,482,751
남북교류협력기금	824,403	590,408	500,000	914,811
재난관리기금	2,210,336	577,851	561,481	2,226,706
노인복지기금	161,293	72,268	15,828	217,733
양성평등기금	233,973	33,852	15,773	252,053
체육진흥기금	2,235,463	156,032	50,000	2,341,495
식품진흥기금	32,194	13,976	7,625	38,545
농업발전기금	1,605,689	1,850,227	990,000	2,465,916
농기계임대사업기금	917,415	2,997,654	3,000,000	915,069
향토장학기금	207,728	595,366	429,738	373,357
옥외광고정비기금	326,948	246,843	224,723	349,06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7,156	141,497	125,000	23,652
재정안정화기금	54,002,630	5,203,111	13,200,000	46,005,741

검사결과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본년도말 현재액은 69,606,897천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6,082,354천원이 감소한 것이다. 본년도에 기금의 지출액은 19,607,530천원이며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다.

#### 4. 재무재표의 결산

2020회계연도 연천군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전년대비증감	
			금 액	비 율
<b>자 산</b>	<b>2,414,002</b>	<b>2,469,467</b>	<b>55,465</b>	<b>2.3%</b>
I. 유동자산	349,879	295,081	-	-
II. 투자자산	4,725	5,307	-	-
III. 일반유형자산	89,664	102,192	-	-
IV. 주민편익시설	463,264	492,249	-	-
V. 사회기반시설	1,502,629	1,571,174	-	-
VI. 기타유동자산	3,841	3,464	-	-
<b>부 채</b>	<b>21,734</b>	<b>20,671</b>	<b>△1,063</b>	<b>△4.9%</b>
I. 유동부채	13,063	12,479	-	-
II. 장기채입부채	-	-	-	-
III. 기타비유동부채	8,671	8,192	-	-
<b>순자산</b>	<b>2,392,268</b>	<b>2,448,796</b>	<b>56,528</b>	<b>2.4%</b>
I. 고정순자산	2,056,991	2,166,650	-	-
II. 특정순자산	78,226	71,911	-	-
III. 일반순자산	257,051	210,235	-	-

재정상태에서 전체자산은 2.3%증가, 전체부채는 유동부채의 감소로 4.9%감소 되었으나 순자산은 2.4% 증가하였음. 특히 장기채입 부채가 없어 재정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전함.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전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사업순원가 (가-나)	266,847	211,486	△55,361	△21%
가.사업총원가	440,635	432,108	△8,527	△1.9%
나.사업수익	173,788	220,622	46,834	27%
II. 관리운영비	△7,146	72,893	65,747	920%
III. 비배분비용	12,189	11,903	△286	△2.3%
IV. 비배분수익	15,340	18,078	2,738	18%
V. 재정운영순원가 ( I + II + III - IV)	256,550	278,204	21,654	8%
VI. 일반수익	385,299	311,206	△74,093	△19%
<b>VII. 재정운영결과 (V-VI)</b>	<b>128,750</b>	<b>33,002</b>	<b>95,748</b>	<b>△74%</b>

○ 연천군의 2020년 발생한 사업 순원가는 사업 총원가 432,108백만원에서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20,622백만원을 차감한 211,486백만원이다.

2020회계연도 연천군의 재정운영결과(총비용-총수익)는 △33,002백만원으로 전년도 의 128,750백만원보다 △95,748백만원(△74%) 감소하였음

## 5.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부서명	전략 목표 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비고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달성 수 (B)	미달성수	달성률 (A/B)	
<b>계</b>	<b>23</b>	<b>72</b>	<b>175</b>	<b>134</b>	<b>41</b>	<b>76.0</b>	
기획감사담당관	1	1	6	4	2	66.6	
행정담당관	1	3	6	4	2	66.6	
문화체육과	1	3	4	3	1	75.0	
관광과	1	3	5	5	0	100	
일자리경제과	1	4	10	9	1	90.0	
복지정책과	1	4	8	7	1	87.5	
사회복지과	1	4	13	12	1	92.3	
세무과	1	1	6	6	0	100	
회계과	1	1	4	4	0	100	
종합민원과	1	4	7	7	0	100	
투자진흥과	1	7	8	4	4	50.0	
안전총괄과	1	5	21	15	6	71.4	
환경보호과	1	3	4	3	1	75.0	
농업정책과	1	4	6	0	6	0	
축산과	1	4	23	20	3	86.9	
산림복지과	1	2	6	6	0	100	
건설과	1	5	6	6	0	100	
도시주택과	1	2	6	4	2	66.6	
보건의료원	1	2	8	5	3	62.5	
농업기술센터	1	2	6	3	3	50.0	
의회사무과	1	1	3	3	0	100	
선사관리사업소	1	2	4	2	2	50.0	
통일평생교육원	1	5	5	2	3	40.0	

※ 대상 : 본청, 사업소, 의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천군은 본 회계연도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연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23개)-정책사업목표(7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1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그 결과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관광과 등 7개 과는 100%를 달성한 반면, 농업정책과 등 16개부서 42지표(24%)미달성에 그 치는 결과를 보였다.

##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 (1) 채권

#### 채권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b>합계</b>	<b>5,711,826</b>	<b>1,277,865</b>	<b>1,829,202</b>	<b>5,110,490</b>
일반회계	2,569,050	228,716	172,320	2,625,446
공기업특별회계	-	-	-	-
상수도	-	-	-	-
하수도	-	-	-	-
기타특별회계	720,626	9,149	334,721	395,053
주택사업	-	-	-	-
저소득주민생활	287,478	1,030	288,508	0
의료급여	433,147	8,119	46,213	395,053
기금	2,422,150	990,000	1,322,160	2,089,990
농업발전기금	2,422,150	5,110,490	1,322,160	2,089,990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10,490천원으로 확인되었음.

### (2) 채무

#### 채무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b>합 계</b>	<b>-</b>	<b>-</b>	<b>-</b>	<b>-</b>
일반회계	-	-	-	-
공기업특별회계	-	-	-	-
하수도사업	-	-	-	-

검사결과 채무는 없음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채무의 상환 예정은 다음과 같다.

###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천원)

구분	채무액	2020	2021	비 고
합계 (전년도이월액)	-	-	-	
공기업특별회계	-	-	-	
차입금	-	-	-	
채무부담행위 (연도말잔액)	-	-	-	

### (3) 공유재산

본 년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	감		
합계	969,866,144	51,850,074	9,090,612	1,012,625,605	
행정 재산	공용재산	203,087,572	8,311,510	72,661	211,326,421
	공공용재산	663,985,642	25,372,581	8,686,730	680,671,493
	기업용재산	3,639,673			3,639,673
	보존용재산	30,744,621	2,202,989		32,947,609
	소계	901,457,508	35,887,080	8,759,391	928,585,196
일반재산	68,408,636	15,962,994	331,221	84,040,409	

검사결과, 결산액은 전년도 보다 42,759,461천원이 증가하였다.

### (4) 물품

물품증감 및 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량	995	179	63	1,111
금액	11,065,699	1,694,593	692,414	12,067,878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1,002,179천원이 증가한 12,067,878천원이 확인되었고 증가사유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 등의 신규 취득으로 발생한 것임.

## **Ⅲ.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구분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내용	처리부서	비고
1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업의 예비비 배정 지양	건의	기획감사담당관, 안전총괄과	
2	법률 자문료 증액 및 실과별 배분 계상	건의	기획감사담당관	
3	주요사업기간 준수	건의	투자유치과, 도시과	
4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형평성 유지	건의	기획감사담당관	
5	계속비사업 예산 미사용	권고	부서공통	
6	사고이월 전 명시이월	권고	기획감사담당관, 부서공통	
7	돼지풀제거 시책의 효율적 운용	건의	환경보호과	
8	국·도비사업 추진 미흡	개선·권고	축산과	
9	농업정책사업 추진미흡	개선·권고	농업정책과	
10	일자리사업 예산관리 운영 미흡	개선·권고	지역경제과	
11	세입예산 세수추계 미흡	개선·권고	세무과	
12	예비비 사용 대한 신중한 집행	개선·권고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건설과, 도시과, 행정담당관, 안전총괄과, 보건의료원	
13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급 개선	건의	건축과	
14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개선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종합민원과	
15	결산서와 일계표상의 합계액 상이	개선·권고	투자유치과, 통일평생교육원, 군금고	
16	시설관리공단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예산집행 철저	개선·권고	연천군시설관리공단	
17	결산상의 금액과 군금고 발행 일계표 누계액과의 차이 발생	개선	세무과, 맑은물관리사업소	
18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 실제액 산출에 대한 신뢰성 제고	개선	투자유치과, 환경보호과, 보건의료원	
19	퇴직급여충당부채 인원과 추계액 및 퇴직급여설 정액 상이	개선	회계과, 맑은물관리사업소	
20	특별회계 세입·세출 일계표 합계액 상이	개선·권고	복지정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21	하수도특별회계 수용가 미수금 회수조치	개선	맑은물관리사업소	
22	결산 전 회계담당직원 결산에 대한 업무연찬	권고	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	
23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통장관리 강화	권고	부서 공통	
24	댐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항목 집계 정확성제고	권고	건설과	
25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서작성 철저	개선	지역경제과	

## [1] 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업의 예비비 배정 지양 (건의)

[현 황]

(단위: 천원)

조직	단위	통계목	지출결정액	예비비배정일	3회추경일	사유발생시기	비고
안전총괄과	재해예방 및 복구	민간인 재해복구 보상금	186,236	10월6일	9월22일	8월말 9월초	

[문제점]

- 2020년도 결산서 제5장 예비비지출 나. 예비비사용명세서 -802-01 재해 재난목적예비비와 관련,
- 「지방재정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 하도록 되어있음. 위 현황의 경우 10월 6일에 예비비를 영달 받았음에 비추어, 9월 22일 제3회 추경이 확정되었고, 8월말, 9월 초순경에 예산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을 추경 확정후 14일이 지나 예비비를 사용한 사항임.

[개선 · 권고사항]

-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 가능한 모든 사항은 예산서에 명기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비비는 예산에 계상할 시간적 여유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한정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법률 자문료 증액 및 실과별 배분 계상 (건의)

[현 황]

(단위: %, 천원)

소송발생건수		자문료 지급		2020년 패소가액	2020 패소율
총건수	2020신규	건수	금액		
30	26	22	8,500	226,410	47.6

[문제점]

- 2020년도 소송발생 건수는 26건이고, 패소가액은 226,410천원이며, 자문료 지급액은 22건에 8,500천원, 패소율은 47.6%로 조사되었음.
- 상기와 같이 소송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패소율이 높은 것은 소송전 행정 처리 시 법규의 연찬이 완벽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사료됨.

[개선 · 권고사항]

- 상기와 같이 소송건수가 다수 발생하고 패소율이 높은 것은 소송전 행정처리시 법규의 연찬이 완벽하지 못하여 발생한다고 사료되어,
- 소송이나 민원의 발생이 예상되는 중요 행정의 집행시, 최종 집행전에 **분야별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에 사전 충분한 자문(유료)을 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이 요구되므로
- 기존 자문료 확보부서인 기획(법무팀) 이외에 건설, 환경, 맑은물 기타 등 법률적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서가 충분한 자문소요 예산을 확보하여 기획부서(법무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유로이 직접 자문요구에 임함으로써 민원 또는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3] 주요사업기간 준수 (건의)

[현 황]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상황	진도
			기투자	당해연도			
투자유치과 (도시과)	신서도신권 지역활성화 (주거환경개선)	1식	1,000,000	375,000	2017~ 2020	용역진행 계약심사	70%

[문제점]

- 『결산서 첨부서류』 (9)주요사업 추진현황 관련,
- 계속비 사업의 추진시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2020년도 결산서 첨부서류에 따르면 “신서도신권역 지역활성화(지특)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완공계획년도인 2020년까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음.

[개선 · 건의사항]

-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추후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형평성 유지 (건의)

[현 황]

(단위: 개, 원)

위원회 수	회의참석 수당 단가 범위	회의참석수당 합계	비고
78	80,000 ~ 300,000	142,712,000	

[문제점]

- 2020회계년도 결산검사와 관련, 위원회 현황을 파악한바, 위원회 78개소 회의참석수당 단가범위 80,000원~300,000원, 총 수당 합계 142,712천원으로 조사 되었음.
- 상기 자료에 의하면 유사위원회 등 위원회 수가 과다하며, 회의 참석 수당의 단가 범위가 최하 80,000원에서 최고 300,000원으로 격차가 심함.

[개선 · 건의사항]

-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위원회 심사 대상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의거, 그 격차가 있음은 불가피 하다 하겠으나 점차 그 격차를 좁혀 나갈 것을 건의합니다.

## (5) 계속비사업 예산 미사용 (권고)

[현 황]

(단위: 개, 원)

사업건수	전년도 이월	지출액	집행잔액	잔액비율	비고
8	35,479,147	134,422	35,344,725	99.6%	

[문제점]

- 2020회계년도 결산서 첨부서류 13. 계속비 결산명세서-1 총괄명세서 관련
- 상기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인 바, 다음 연도 예산이월시 예산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였어야 하나 수요 예측의 미비로 2020년도로 이월한 예산이 전액 잔액처리 되었음.

[개선 ·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 2020년도 계속비의 경우 대부분 잔액처리 함으로써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6] 사고이월 전 명시이월 (공통) (권고)

### [현 황]

- 2020 결산서 첨부서류 (14) - 2 이월사유별 현황 나. 사고이월과 관련임.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의하면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명시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20년도 결산서상 사고이월의 경우,
  - 사업기간이 다음연도로 확정된 사업이거나,
  - 당해연도와 다음연도에 걸쳐 계약된 사업,
  - 동절기, 토지협의 등으로
- 당해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예산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 하는 경우가 많았음.

### [개선 · 권고사항]

- 예산을 명시이월 하지 않고 사고이월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고이월 해당연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재 사고이월이 불가하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명시이월 함으로써 다시한번 사고이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합니다.

## (7) 돼지풀제거 시책의 효율적 운용 (건의)

[현 황]

(단위: m<sup>2</sup>,천원)

구분	2018	2019	2020	비고
면적	4,250,000	3,740,000	3,696,000	
예산	320,000	314,000	326,000	

[문제점]

- 연천군 외래종 식물(돼지풀) 퇴치 추진현황에 따르면, 예산의 적극적 지원과 공직자들의 노력으로 그 면적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외래종 식물(돼지풀)이 우리나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 등을 비추어 볼 때 빠른 퇴치가 요구됨

[개선 · 권고사항]

- 외래종 식물(돼지풀)의 조기퇴치를 위하여
  - 예산의 충분한 확보
  - 전문 제거인력(제거 일용인부) 확보 요구되며
  - 집단 서식지 2곳을 선정하고 3년 정도 비교기간을 정하여, 어린상태에서 제거하는 방법과 일정 성장 후 제거하는 방법의 효율성을 검토 등
- 지속적으로 효율적 퇴치방안을 연구해 나감으로써 조기에 퇴치 완료한다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합니다.

## [8] 국도비 사업 추진 미흡 (개선 · 권고)

[현 황]

○ 예산과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가축분뇨 퇴비살포	20,000			20,000	0	20,000	
유소년 승마단창단	13,000	10,000	3,000	(-7,000)	0	13,000	
승용마 조련강화	15,600		15,600	(-3,600)	0	15,600	
낙시터 환경개선	28,000		8,400	19,600	0	28,000	
합 계	76,600					76,600	

[문제점]

- 상기와 같이 예산성립후 여러 가지 사유로 예산 미집행이 발생한바, 가축분뇨 퇴비살포사업, 낙시터 환경개선사업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부족하였으며, 유소년 승마단 창단,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은 군비(10,600천원) 미확보로 사업추진을 못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이 부족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사업대상과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과정상 불가피하게 변경시 추경에 예산 삭감 조치를 하고, 보조사업은 군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 [9] 농업정책사업 추진미흡 (개선·권고)

[현 황]

○ 농업정책과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기타
	계	국비	도비	군비			
영세농유기질비료지원	15,000			15,000	0	15,000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사업	120,000			120,000	0	120,000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152,500				45,000	64,500	
계	287,500			135,000	45,000	199,500	

[문제점]

- 영세농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못하는 소규모 영세농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바 지원실적이 전무하고, 친환경퇴비시설현대화사업, 버섯재배사 사업은 법령제한사항과 자부담 능력으로 사업 시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

[개선 및 권고사항]

- 농업정책사업 대상선정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람.



## [10] 일자리사업 예산관리 운영 미흡(개선·권고)

[현 황]

○ 지역경제과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기타
	계	국비	도비	군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관리	109,722	54,861		54,861	28,284	81,438	
코로나극복지역 고용일자리	64,791			64,791	0	64,791	
계	174,513	54,861		119,652	28,284	146,229	

[문제점]

- 상기 현황과 같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관리 사업은 1회만 시행하였으며, 코로나극복지역 고용일자리 사업예산은 지역 일자리 확충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집행하지 않아 지역일자리 사업에 부족함이 있음.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일자리 사업은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선발에 노력하여 확보된 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아울러 일자리가 증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 (11) 세입예산 세수추계 미흡(개선·권고)

**[현 황]**

○ **세무과**

(단위:백만원)

과 목	세입예산액	실제수납액	미편성액	비율	비고
지방세	40,795	42,406	1,611	4%	
경상적세외수입	10,661	11,556	895	8%	
임시적세외수입	13,616	17,663	4,047	30%	
계	65,072	71,625	6,553	11%	

**[문제점]**

- 2020년도 세입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방세분야는 세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은 895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4,047백만원을 과소하게 세입예산 편성하여 세수추계과 미흡함.

**[개선 및 권고사항]**

- 세입추계는 사전에 충분한 실태파악과 3~5년정도 결산결과를 시계열 분석하여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입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 (12)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신중한 집행 (개선·권고)

### [현 황] - 1

○ 예비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천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비고
조직	단위	통계목			
관광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0	2,319	
농업정책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000	34,979	
축산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	53,354	
건설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60	7,402	
도시과	기본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	4,968	
합계			113,180	103,022	

### [현 황] - 2

(단위:천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잔액	비고
조직	단위	통계목				
행정담당관	행정관리및 복무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00	22,000	12,000	
안전총괄과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6,236	0	186,236	
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000	55,341	34,658	
합계			310,236	77,341	232,894	

### [문제점]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황1 에 의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것으로 추경(4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사안임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 [현황 2 ] 에 대한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고 집행시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함에도 잔액이 232백만원 발생하는 등 효율적 예비비 관리에 미흡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향후 예비비의 편성 및 사용은 예측할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편성 및 집행하시고, 일상적인 업무지원 예산은 세출예산 편성하여 적정예산이 집행되어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13)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급 개선 (건의)

[현 황]

○ 공동주택 (건축과)

구분	단지수	세대수	10년미만	1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비고
의무관리대상	8	1,868	2단지	6	-	
비의무관리대상	163	3,991	40단지	54	69	

○ 2020년 보조금 지급현황

(단위:천원)

예 산 액			신 청 액		지 급 액		비고
계	도비	군비	단지수	지급액	단지수	지급액	
126,000	56,000	70,000	10	146,110	10	119,612	의무관리 2단지 비의무관리 8단지

[문제점]

- 우리군 관내에 건립연도가 오래된 공동주택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보조금지원기준(별표2) 한도가 낮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설치 등 사업비 소요가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공동주택의 외부도색은 지원되지 않아 주민들이 적정비용이 보조되도록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 [개선사항]

- 연천군 주택조례 「제6조의 별표2」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기준에서 보조금 최대한도를 각종 공사비 인상에 따라 500 ~ 1,000만원 정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이 필요하며,
  - 동 조례 제4조(보조금지원대상)3항1호의 공동주택 외벽도장공사는 10년내 1회 지원토록 개정하여 외부 도색부분도 일정부분 가능토록 개정 바라며, 또한 준공후 2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보조금 최대한도의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20% 가산하여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토록하여 공동주택 주거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기를 권고함.
- \* 연천군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20% 가산규정이 있음

## (14) 성과계획 및 보고서 작성 (개선)

### [현 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전략 목표수	성과목표					결산액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효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3	72	175	24	109	42	595,782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4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연천』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 결과는 위와 같음.
- 성과보고서 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검토한바 목표설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없이 자동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거나 실적산출에 있어서도 실적 오기나 누락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함.

### [개선·권고사항]

- 당해연도 예산의 변경사항에 대한 내역을 반영(수정)하여 관리하여야하며,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설정시 도전적인 목표 및 측정산식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내실 있는 지표관리로 전략목표에 대한 실적을 적절히 평가하여 재정 운영계획에 반영(환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정책목표와 연관된 성과지표를 추가 및 수정 (부서별) 참고 하시기를 개선 권고함.

붙임: 정책목표와 연관된 성과지표 추가 및 수정 대상표 1부.

[붙임 1]

정책목표와 연관된 성과지표 추가 및 수정 대상표

부서별	성과지표명	성과보고서	개선 및 수정사항	비고
지역경제과	○ 버스승강장 설치	○ 목표: 3개소 ○ 실적: 13개소	○ 예산서: 20개소 ○ 예산액: 240,000천원 ※실행 적정개소 산정목표 설정	목표설정 과소
	○ 일자리지원 서비스 확충	○ 목표: 940 ○ 실적: 0	○ 일자리취업실적이 641명 이나 기재누락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지원가구	○ 목표: 50가구 ○ 실적: 0가구	○ 실적: 116가구(232%)	(초과달성)
투자유치과	○ 고대산베이스볼 파크 유지관리	○ 하자 발생건수 -목표 0 -실적 0(100%)	○ 유지관리 정비건수 또는 이용건수로 목표설정	
종합민원과	○ 식품안전사고 발생건수(이하)	○ 발생건수 -목표: 30 -실적: 0 ○달성률:100%	○ 식품안전사고 발생은 목표 설정이 난이한 사항으로, 위생점검 또는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대체	



## **(15) 결산서와 일계표상의 합계액 상이(개선·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결산서의 세입항목과 세출항목의 합계액 상이
- (금고) 은행발행 세입세출일계표상의 합계액과 차이가 발생.  
특히, 기금회계상에서 세출항목(남북교류기금 500,000천원,  
향토장학기금 300,000천원)에서 다수 발생함.

### **[개선 및 권고사항]**

- 농협출장소 담당직원 및 기금담당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는 정정하시기 바람.

## [16]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회계과목 집계액의 정확성 제고(개선·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관리공단의 손익계산서상의 판매관리비 예산집행의 정산결과 차이가 발생 예를 들면 판매비와 일반관리 중 사회보험료가 2019년도 37백만원에서 2020년도에는 109백만원으로 거의 250%이상 증가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예산집행과 비용집행 결과에 대해 정산하고 결산할 때 더욱 신중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회계항목에 대한 집계는 안분해서 집계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부서와 경영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합산하여 손익계산서에 집계되어 검증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상대적으로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17) 결산서상의 금액과 군금고 발행 일계표 누계액집계기준 차이 발생 (개선)**

### **[현황]**

-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결산서 상의 세입·세출 합계액과 군금고 출장소 발행 결산 기준에서의 일계표상의 세입·세출 합계액이 서로 상이함.

### **[문제점]**

- 일계표상의 기준 날짜가 결산 정리 기간이 끝나는 익년 1월 20일 기준이 아니라, 1월 27일(공기업특별회계 세출) 또는 1월 28일(일반회계 세입) 기준으로 일계표가 작성되었고, 이에 맞추어 결산서가 작성되어지는 예산결산 시스템의 문제가 함축되었다고 사료됨.

### **[개선사항]**

- 군금고가 발행하는 세입·세출 누계 일계표상의 금액과 결산서상의 결산 누계액을 결산 전에 조정기간을 활용해서 불부합 수치를 조정하고, 그 이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준비하여 연천군청의 결산검사, 도감사, 기타감사에 철저히 준비 요망함.
- 군금고 상의 기금결산 잔액과 결산서 상의 잔액을 결산 전에 조정하여 결산검사시에 충분히 불부합 사유를 파악하여 결산 종료시에 완벽한 결산서가 발간되시길 요망함.

## [18]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 실제액 산출에 대한 신뢰성 제고 (개선)

### [현황]

#### 재고자산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계
판매용부동산	4,326,175,992				4,326,175,992
판매용물품	37,671,765				37,671,765
저장품	80,621,682			81,899,133	162,520,815
계				81,899,133	81,899,133

### [문제점]

-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의 세부내역 중에서 판매용물품(쓰레기봉투)의 재고실사액이 금37,671,765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로 관리하는 부서와 판매·재고를 관리하는 부서가 서로 상이하여 결산검사시에 재고 실사표를 분석한 결과 2020년 12월 31일 기준 쓰레기봉투 재고자산의 실제 수량에서 결산서상의 실제 재고수량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며 또한, 재고자산 실태파악 시기가 불분명한 실정임.

### [개선사항]

- 재고자산 재고 파악은 최소한 분기별, 재고 파악할 때에 관리부서 담당 직원과 실제 판매·재고 관리하는 부서직원이 함께 재고파악 현장에 참여하여 실제수치를 결산서에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19) 퇴직급여충당부채 인원과 추계액 및 퇴직급여설정액이 상이 개선

### [현황]

####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세부내역

(단위: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계
설정대상인원수(명)	166	1			167
전년도말퇴직금추계액(A)	6,384,444,812	15,422,127			6,399,866,939
당기 퇴직금지급액(B)	865,117,120	-			865,117,120
당기 퇴직급여설정액(C)	400,550,671	5,603,702			406,154,373
계(A+B+C)	5,919,878,363	21,025,829			5,940,904,192
차감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145,249,310)	(14,069,000)			(159,318,310)
차감잔액	5,774,629,053	6,956,829			5,781,585,882

### [문제점]

- 전년도 대비 퇴직급여충당부채 대상인원과 퇴직금지급액, 퇴직급여설정액에서 지방공기업특별회계(상·하수도사업)에 포함된 퇴직급여대상자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지 않고 금액으로 약 15억원이 누락되어 세부내역이 결산서 상에 표기되어 있음.

### [개선사항]

- 다음연도 결산검사 대비 결산준비단계에서 퇴직급여 설정대상 인원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대상인원수를 산출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우선 설정, 집계하여 주시고, 실제로는 퇴직금을 일반회계에서 일괄 지급하지만, 세부내역은 비교 가능하도록 구분하여 집계하여 정확성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 특별회계 세입 세출 일계표 합계액 상이(개선·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생활안정,주차장,발전소,댐주변특별회계 결산서와 일계표 상이

회 계 명	결산서 합계액	일계표 금액	비고(원)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	939,858,000(정)	944,130,250(오)	
주차장특별회계	737,340,265(정)	737,304,575(오)	
발전소특별회계	94,493,870(정)	89,954,7609(오)	
댐주변 특별회계	251,800,000(오)	252,489,850(정)	

### [개선 및 권고사항]

- 농협출장소 담당직원 및 특별회계담당자의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발생한 차액에 대해서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21) 하수도특별회계 수용가 미수금 회수조치 (개선)

**[현황]**

2016년 이전 수용가 미수금 명세내역

(단위:원)

년도	용도별	조정액	수입액	미수액	비고
2016 이전	가정용	535,770	13,020	522,750	
	일반용	493,020	23,480	469,540	
	대중탕용	<b>20,070,990</b>	-	<b>20,070,990</b>	
계		21,099,780	36,500	<b>21,063,280</b>	

**[문제점]**

- 하수도특별회계 재무제표(결산서)상의 수용가미수금 중에 2016년 이전 대중탕용 미수금이 약 2천만원 가량 체납된 상태임.

**[개선사항]**

- 상기 미수금에 대한 법적조치(압류)를 진행한 상태이나 차후 미수금 회수 방법을 강구하여 조기에 미수금이 회수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2) 결산 전 회계담당 직원 결산에 대한 업무연찬(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수 년동안 결산검사기간에 계속 문제점으로 결산서상의 세목분류 및 집계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
- 원인으로는 특별회계와 기금회계 담당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불충분과 회계처리 미숙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권고사항]**

- 매년 결산 전에 1~2회에 나눠서 결산업무 추진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결산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회계담당 직원들에 대한 통장관리 강화 (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결산검사 중에 회계담당직원의 통장관리에 약간 소홀한 점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특별회계, 기금회계 담당직원들이 많은 통장을 소유하여 관리 소홀과 통장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권고사항]

- 차후 관리중인 많은 통장들을 간소하게 정리하시고 통장소재는 담당 직원이 철저히 관리하여 통장관리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4] 댐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항목 집계 정확성 제고 (권고)

### [현황 및 문제점]

- 결산서상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목별 조서를 보면, 수납총액과 그 외 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집계액이 차이가 있음

### [권고사항]

- 정확한 결산항목 집계절차를 거쳐 신뢰성 있고 적절한 세목 산정과 세입액 집계로 결산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주시기를 권합니다.

분류 \ 종류	결산서	수정액	차이금액	비 고
그외수입	248,500,000	249,195,940	695,940	(공공예금이자누락)
순세계잉여금	3,300,000	3,293,910	6,090	(-)
합 계 액	251,800,000	252,489,850	689,850	(+)

## [25]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서 작성 철저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결산서상의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분의 집계금액 차이 발생

### [개선사항]

- 결산서 세입부분을 아래와같이 수정된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현액은 656,742,000원(전년도 이월금 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737,340,265원이고  
지출액은 210,690,680원이며  
그 결산상 잉여금은 526,649,58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원금0원, 이자0원)을 공제한 회계별 잉여금  
총액 526,649,58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 명시이월 0원(자금없는 명시이월액 0원)
  - . 사고이월 0원(자금없는 사고이월액 0원)
  - . 계속비이월 0원(자금없는 계속비이월액 0원)
  - . 보조금실제반납금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26,649,585원이다.

붙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조서 1부.

(표1)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과목 장 - 관	예산액 ㉑	전년도 이월액 ㉒	예산현액 ㉓=㉑+㉒	징 수 결정액 ㉔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합 계	656,742,000		656,742,000	807,152,498	737,340,265			737,340,265	10,604,880	69,812,230
200 제외수입	226,742,000		226,742,000	262,156,660	192,344,430			192,344,430	10,604,880	69,812,230
210 경상적제외수입	176,742,000		176,742,000	137,991,750	137,991,750			137,991,750		
212 사용료수입	174,000,000		174,000,000	131,050,600	131,050,600			131,050,600		
212-08 기타사용료	174,000,000		174,000,000	131,050,600	131,050,600			131,050,600		
216 이자수입	2,742,000		2,742,000	6,941,150	6,941,150			6,941,150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742,000		2,742,000	6,941,150	6,941,150			6,941,150		
220 임시적제외수입	50,000,000		50,000,000	124,164,910	54,352,680			54,352,680	10,604,880	
223 과징금 및 과태료등	20,000,000		20,000,000	45,697,480	41,811,780			41,811,780	10,604,880	3,885,700
223-05 과태료	20,000,000		20,000,000	45,697,480	41,811,780			41,811,780	10,604,880	3,885,700
225 지난년도 수입	30,000,000		30,000,000	78,467,430	12,540,900			12,540,900		65,926,530
225-01 지난년도 수입	30,000,000		30,000,000	78,467,430	12,540,900			12,540,900		65,926,53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30,000,000		430,000,000	544,995,835	544,995,835			544,995,835		
710 보전수입등	430,000,000		430,000,000	544,995,835	544,995,835			544,995,835		
711 잉여금	430,000,000		430,000,000	544,995,835	544,995,835			544,995,835		
711-01 순세계잉여금	430,000,000		430,000,000	544,995,835	544,995,835			544,995,835		

## **IV.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전년도 결산검사 조치내용

구 분	개선 및 권고사항					비고
	합계	개 선	권 고	건 의	시정	
합 계	29	12	10	5	2	
세입·세출분야	6	1	5	0	0	
예산분야	11	4	3	4	0	
특별회계, 기금	2	0	0	0	2	
기타(채권,채무 등)	10	7	2	1	0	

○ **세입·세출분야** 세입분야에서 적극적 납부 독촉 및 자진 납부유도등을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힘쓰며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관리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납자 대상 적극적 납부 독려, 다양한 세수 추계 분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수 추계를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계획의 정확한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권고함.

○ **예산분야**에서 예산편성 시 사업별 성과분석 보고서 등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편성 및 자금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국.도비 보조내시 비율에 따른 정확한 정산이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돌발상황 발생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하여 미시행사업을 최소화하고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가 반영되도록 권고함.

- **특별회계 · 기금분야** 중 특별회계 담당자들의 업무연찬이 필요하며, 출납폐쇄기한 및 회계연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규정을 준수하고, 통합관리기금 일반예탁금에 대하여 총괄 조성금액으로 구분 표기함으로서 연속성 있게 관리해 주시길 권고함.
- **기타분야** 에서는 재무재표 상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으로 우발채무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소송 진행 중에서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한 판결문상의 결정금액을 우발채무로 계상하기 바라며, 또한 소송대책위원회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를 권고함.

## V. 우수사례



# 공원관리 및 가로화단 조성 우수사례

## 1. 공원관리 및 가로화단 조성

### □ 도시공원 및 녹지현황

도시공원	소공원	가로변 녹지
15개소 (200,804㎡)	15개소 (76,000㎡)	꽃탑 3개소, 화단 3개소 화분 272개

### □ 추진사항

- 도시공원 내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596백만원)
  -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이용자 편의시설물 설치
  -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자체 관리(기간제 근로자 8명)
- 계절별 가로경관 조성 및 유지관리(595백만원)
  - 꽃탑·화단 등 경관 조성 및 조경수·초화 생산
  - 경관녹지 및 화단 자체 관리(기간제 근로자 15명)

### □ 우수사례

- 조경수 및 초화류 자체 생산 및 활용
  - 왕벚나무 외 3종 1,565주 생산 ⇒ 경관숲 조성 565주, 민간배부 1,000주
  - 메리골드 외 4종 100,000본 생산 ⇒ 꽃탑 및 화단 식재



○ 조경수 및 초화류 자체생산 현황

구 분	수목 생산			초화 생산
	차탄리	고능리	현가리	차탄리
면 적	4,000㎡	7,000㎡	4,873㎡	790㎡
양묘량	자작나무 외 2종 1,500주	라일락 외 5종 3,540주	소나무 2,160주	메리골드 외 1종 30,000본



□ 기대효과

- 우리군의 기후에 적응된 수목 및 초화로 경관품질 향상
- 자체 생산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지역일자리 창출